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35
----------	------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윤준병 · 서영석 · 박희승
정동영 · 허 영 · 허종식
서영교 · 박민규 · 문대림
김태선 · 강준현 · 조계원
민형배 · 이원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林道)

제9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을 “조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임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1.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u>	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林道)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u>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u>	<u><삭 제></u>

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생략)

② (생략)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조성을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